

시험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안내

그 동안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하여 많은 시정이 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 감독교수 조치사항

- 가. 입실 후 책상의 오와 열을 똑바로 맞춘 후 임의로 좌석(열)을 이동시켜야 한다.
 - 나. 감독 교수의 직위와 성명을 흑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필기구 외 책, 노트 등을 강의실 앞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유의사항을 시험지 배부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마. 대리시험 예방을 위해 학생증(신분증)으로 대조(이름을 수정한 자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바. 책, 신문 등을 보거나 강의실 밖을 지속적으로 보는 등 감독행위 이외의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 부정행위를 발견시 반드시 학생지원팀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 시험 감독의 철저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한 방법임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학생 준수 사항

- 가. 모든 과목의 시험에 응할 경우에는 필히 학생증(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나. 감독교수의 지시사항 불응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된다.
- 다. 컨닝페이퍼 또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메모지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 라.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학칙에 의거 처벌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 마. 부정행위자를 발견 시 감독교수 또는 건의함, 인터넷, 서신 등으로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2026. 04.

교 무 처 장